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장제원·홍문표·정동만

추경호・이철규・김석기

박덕흠 • 윤창현 • 지성호

조태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 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필요함.

이에 시·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 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4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 내에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재설 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
	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야 한다.
<u>④</u> ~ <u>⑥</u> (생 략)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u>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u>제6항</u> 까지의 규정을	<u>제7항</u>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⑧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